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23. . . (제 회)	
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
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법무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3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
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거소이전신고 시 첨부할 수 있는 서류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
국내거소증의 재발급 사유에 “성별”을 추가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의
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고자 함

3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
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대통령령 제 호
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제1항 전단 중 “국내거소이전신고서를”을 “국내거소이전신고서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”로 한다.

제13조제1항제4호 중 “거주국”을 “성별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1조(국내거소이전신고 등) ① 거소를 이전한 사람이 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국내거소이전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<u>국내거소이전신고서를</u> 신거소(新居所)를 관할하는 시·군·구의 장, 읍·면·동의 장 또는 청장·사무소장·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국내거소이전신고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할 수 있다.	제11조(국내거소이전신고 등) ① ----- ----- ----- <u>국내거소이전신고서에</u> <u>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</u> ----- -----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.
② ~ ⑥ (생략)	② ~ ⑥ (현행과 같음)
제13조(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) ①청장·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은 국내거소신고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국내거소신고증을 재발급할 수 있다.	제13조(국내거소신고증의 재발급) ①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1. ~ 3. (생략)	1. ~ 3. (현행과 같음)
4.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성명·생년월일·국적 또는 <u>거주국</u> 이 변경된 경우	4. ----- ----- <u>성별</u> ----- -----

5. (생략)	5. (현행과 같음)
② ~ ⑤ (생략)	② ~ ⑤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법무부 외국인정책과	
연 락 처	(02) 2110 - 4116